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손문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1년 3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1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관련 조문 규정(안 제3조)
-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 용도 조문 규정(안 제4조)
-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(안 제5조)
 - 기금 운용관 : 보건복지국장
 - 분임 기금운용관 : 식품의약품안전과장
 - 기금 출납원 : 위생관리 담당사무관
-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(안 제6조)
 - 위원장 : 보건복지국장에서 → 행정부지사로
 - 당연직 위원 :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→ 보건복지국장으로
- 기금의 존속 기한 조문 명기(안 제14조)
 -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5. 검토의견

가. 전부개정 동기

- 이 조례안의 근거인 「식품위생법」의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,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를 위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2006년 1월 1일)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조문별 내용을 보면

-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조항(안 제3조,제4조)
 - 기금의 재원 구성과 용도 부분을 조례에 명시 하였음.
-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확대(안 제5조)
 - 현행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기금 운용관(보건복지국장), 기금출납원(위생관리 담당사무관)의 2단계로 지정·운영함으로 보조기관의 장이 배제된 상태임.
 -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 운용관(보건복지국장), 분임 기금운용관(식품의약품안전과장), 기금 출납원(위생관리 담당사무관)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운영하려는 것임.
 - ⇒ 따라서,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부합함
- 기금의 존속기한 명기(안 제14조)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있음
 - 그리고,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임
 - ⇒ 따라서,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

다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「식품위생법」의 조문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「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임.
- 또한, 현행 조례에서 나타나는 불 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